

『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08년 10월 1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8년 10월 1일

라. 상정일자 : 2008년 10월 9일

제13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자치행정국장 김 수 복

나. 제안이유

- 신라불교초전지에 건전한 휴식공간 및 역사문화 교육장 제공을 위한 전통문화체험마을 조성과 모레가정권역의 농촌다움의 유지. 보전과 도농교류를 통한 농촌의 다원적 기능 확충을 위한 농촌마을 종합개발계획의 모레가정문화센터 조성 관련 부지를 매입코자 함

다. 주요내용

【 취득재산 】

□ 신라불교초전지 문화체험마을 및 농촌마을종합개발계획 모레가정문화센터 조성 부지 매입

- 토 지 : 3필지 10,846m²
- 지 상 물 : 건물, 사택, 입목 등
- 예정가격 : 386,926천원(가감정가 기준)
- ※ 구미시 교육청에서 감정 의뢰하여 결정

라. 참고사항

- 「지방자치법」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1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
- 「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」 제12조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관 중 현

○ 본 변경안은
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과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 등 관련 법규에 의거 신라불교초전지 문화체험마을 및 농촌마을종합개발 계획 모레가정문화센터 조성에 따른 토지 및 지상물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써
- 구미시 도개면 도개리 343-1번지 외 2필지의 송도초등학교 폐교 부지 10,846m² 및 지상물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임

○ 검토결과

- 신라불교초전지 문화체험마을 조성과 농촌마을종합개발계획 모레가정문화센터 조성 부지 매입 건은 사업비 확보방안, 관련 기관과의 협의, 농촌마을종합개발계획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 검토하는 등 사업의 타당성 및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의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